2015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5년 11월 26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 4. 결석위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정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박 이 락 금융결제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50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은행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의무 보유하는 데 따른 자산운용 제약 등을 완화하고, 동 증권의 신인도 제고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동 증권을 당행의 대출 담보증권에 포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당행 대출담보증권에 포함하는 방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은행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동 증권을 의무 보유하기로 한 데 따른 자산운용 제약을 완화해 줄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가 31.7조원으로 당초 계획 20조원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은행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동 증권의 신인도 제고를 통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동 증권을 당행 대출담보증권에 포함하되 적절한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한시적인 담보인정, 금융기관별 담보인정 비중 및 적격 신용등급 설정 등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생략)

<의안 제51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호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한 국은행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 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당행 담보대출증권 이외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은행권에서 동 증권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고, 동 증권을 당행의 대출담보로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차액결제이행 담보증권으로 같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동 증권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되 적절한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대출담보증권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채 및 통안증권에 비하여 다소 엄격하게 담보인정비율을 책정하고 참가기관별 담보인정 비중도 설정하는 등의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생략)